

#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

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0000년 0월 00일 까지로 약정 되어있습니다.

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하는 바입니다. 그러므로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아래 건물을 명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임대건물 :

0000년 0월 0일

주 소 :

통지인 :           인

주 소 :

피 통지인 :       귀하